

서대문구인권위원회

결 정

제 목 서대문구청장의 연세로 퀴어문화축제 교통통제 및 행사승인 취소 관련 권고
의안번호 제2014-06호

주 문

서대문구청장에게, 2014. 5. 27. 신춘변영회에 대하여 한 “연세로 퀴어문화축제 교통통제 및 행사승인 취소”를 철회하고 2014. 6. 7. 신춘변영회와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신춘 연세로에서 개최할 예정인 퀴어문화축제의 진행을 보장하고, 앞으로 성소수자임을 이유로 한 행사불승인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개요

가. 권고의 배경

서대문구청장은 2014. 5. 12. 신춘변영회가 신춘 연세로에서 개최 예정인 퀴어문화축제와 관련하여 서대문구 운영의 매주 토요일 14:00부

터 일요일 22:00까지의 연세로 ‘차 없는 거리’를 이 사건 행사 당일인 2014. 6. 7. 토요일에는 10:00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교통통제 협조를 요청한 데 대하여 교통통제 및 행사승인을 하였으나, 2014. 5. 27.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의 국가적 추모분위기를 이유로 위 교통통제 및 행사승인을 취소하였다.

나. 논의과정

서대문구청장의 “연세로 퀴어문화축제 교통통제 및 행사승인 취소” (이하 “이 사건 승인취소”)에 대하여 ‘재허가를 촉구하는 기독교인 150명’의 공개질의서가 제출되고 2014.6.2. 제15회 퀴어문화축제를 지지하는 총 270개 시민사회단체의 공동성명이 발표되는 등 비판여론이 확산되는 한편, 이 사건 승인취소의 이유가 되었던 세월호 추모분위기가 완화되고 일상생활이 복원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어 서대문구 인권위원회는 ‘서대문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 제4호와 제21조 제1항에 의거하여 2014.6.5. 2014년 제2회 임시회를 소집하고 이 사건 승인취소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서대문구청장에게 권고하기로 하였다.

2. 검토 및 참고기준

별지 기재와 같다.

3. 인정사실

‘신촌번영회’의 “퀴어문화축제로 인한 주말 교통통제 협조의 건”, 서

대문구청장의 “교통통제 및 행사승인 안내”, 서대문구청장의 “교통통제 및 행사승인 취소 안내”, 서대문구청의 퀴어문화축제 장소사용 재허가를 촉구하는 임보라 등 기독교인 150명의 민원, 서대문구청의 홈페이지,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홈페이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의 홈페이지, 관련 기사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춘번영회’는 2014. 4. 28. 서대문구청장에 대하여 구글코리아 등의 후원으로 열리는 행사인 퀴어문화축제(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의 개최로 세계적으로 신춘이 알려지게 되고 최대 1만 명의 참여자가 몰려 신춘 상권 활성화와 서대문구 세수 증대에 큰 기여가 예상된다면서 매주 토요일 14:00부터 운영되는 연세로 ‘차 없는 거리’ 교통통제를 이 사건 행사 당일에는 10:00부터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이하 ‘이 사건 승인요청’이라 한다)하였다.

나. 서대문구청장은 2014. 5. 12. ‘신춘번영회’에 대하여 위 협조요청에 관하여 연세로 보행자전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이 사건 행사 당일 10:00~19:00 교통통제에 협조한다는 내용의 “연세로 퀴어문화축제 및 월드컵응원전에 따른 교통통제 및 행사승인 안내(이하 ‘이 사건 승인’이라 한다)”를 통지하였다. 서대문구청장은 이 사건 승인에서 “퀴어문화축제와 관련하여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에 따른 국가적 추모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경우 축제를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등 행사일정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첨부한 “연세로 사용 준수사항” 제3항 제1호에서는 “허가된 행사라도 시행전에 행사의 성격,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행사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 부적합하거나 저촉된다고

판단될 때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합니다.”라는 내용을 적시하였다.

다. 서대문구청장은 이 사건 승인 15일 후, 행사 개최 10일 전인 2014. 5. 27. ‘신춘번영회’에 대하여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의 국가적 추모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이러한 분위기를 감안하여 모든 야외행사를 취소하는 등 추모분위기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퀴어문화축제는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행사에 관한 행사승인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연세로 퀴어문화축제 교통통제 및 행사승인 취소 안내(이하 ‘이 사건 승인취소’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행사의 주최단체인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하여 이 사건 행사 당일 신춘 연세로 일대를 집회 장소로 하여 집회신고를 접수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에 대하여 특별한 금지통고나 제한통고를 한 바가 없다.

마.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2014. 5. 29. 서대문구청이 동성애 혐오단체들의 압력에 굴복해 행사를 취소하였다면서 세월호와 관련하여 애도하고 위로하는 마음을 담아 이 사건 행사를 개최할 것이라는 입장서를 발표하였고, 270개 시민사회단체는 2014. 6. 2. 이 사건 행사가 인권행사로써 세월호 사건과 별개의 사안이 아님에도 동성애 혐오집단의 압력에 의해 이 사건 승인취소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성소수자 차별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승인 취소에도 불구하고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와

‘신춘번영회’는 집회신고를 바탕으로 행사시간을 축소하여 이 사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바. 이 사건 행사가 개최될 예정인 신춘 연세로에서는 2014. 5. 31.~6. 1. 이틀간 “2014 유니브엑스포 서울”이 개최되었는데, 이 행사에는 2013.에도 27,000여 명이 참가하였고, 2014.에는 외교부, 유니세프 등 엔지오, 다수의 기업, 100여 개의 대학생 동아리 등이 참여하여 취업, 유학, 광고, 마케팅, 연애, 여행 등 대학생활과 관련한 100여 개의 부스행사가 이루어졌고, 락밴드, 댄스팀, 힙합그룹 등 10개 이상의 공연팀이 참여한 공연이 2회 이상 열렸다.

사. 최근 대규모 야외행사로서는 2014. 5. 17.~18.송파구청 등이 공동 주최한 “서울재즈페스티벌”이 올림픽공원에서 개최되었고, 당초 2014. 5. 3.~4. 난지한강공원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그린플러그드 서울”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애도의 취지로 2014. 5. 31.~6.1 같은 장소에서 날짜를 옮겨서 개최되었다.

아.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은 2014. 3. 28.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2014. 6. 28.로 예정된 “제6회 대구퀴어문화축제”의 개최를 위하여 2.28기념공원 청소년광장의 대여를 요청한 데 대하여 “도심 공원은 모든 시민의 휴식처로 일부 소수인을 위한 특정행사는 사용할 수 없다”면서 공간대여요청을 거부하였으나, 2014. 4. 2. 대구시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 같은 행사를 규제할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공간대여 불허결정을 취소하고 사과한 사실이 있다.

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 4. 24. 마포구청장이 2013. 10. 24.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언니네트워크'의 "커밍아웃 문화제"라는 성소수자 문화행사 개최를 위한 홍대 앞 나무무대 사용신청에 관하여 "금년 6월 홍대지역 일원에서 무단으로 개최된 퀴어 문화축제를 마포구에서 승인해 준 것으로 오해한 주민들로부터 많은 항의 및 방문 민원이 있었고, 위 커밍아웃 문화제 신청 건도 주민화합에 지장을 초래하고 주민갈등만 유발할 것이 확실하며, 나무무대는 어린 학생들도 통행하는 개방된 장소"라는 등의 이유로 나무무대 사용을 불허한 한 데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록 집단 간 견해차이로 인한 대립과 갈등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사회적 소수자가 불합리한 차별과 억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소수자에 대한 불합리한 편견과 혐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라면서 마포구청장에게 향후 성소수자 관련 행사의 시설이용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사실(국가인권위원회 2014. 4. 24.자 13진정0886700 결정)이 있다.

차. 유엔인권이사회는 2011. 6. 17. 개인의 성적지향 또는 성별정체성과 관계없이 성소수자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인정해야 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방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A/HRC/17/L.9/Rev.1. "인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결의안")한 바 있고, 대한민국 역시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이 결의안에 찬성한 사실이 있다. 또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011. 12. 8. "국제인권법에 따라, 모든 국가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것을 포함하여 폭력과 차별로부터 국민 - 모든 국민 - 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라고 발언한 사실(2011. 12. 8.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폭력과 차별 근절 행사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 메시지, 뉴욕)이 있다.

카. 이 사건 행사에 다수 소속 단체들이 참가하는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이 사건 행사의 각 부스행사에서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 제안하고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진행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철저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한 나라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촉구 천만인 서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4. 판단

신촌 연세로에서의 이 사건 행사의 개최는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라는 주제로 성소수자의 인권과 자긍심을 지지하기 위하여 주민을 포함한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에 관한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와 관련되고, 성소수자와 관련한 행사라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관련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승인취소 또는 이 사건 행사 진행의 제지가 ‘신촌번영회’의 구성원과 이 사건 행사에 참가한 주민의 집회의 자유와 평등권 등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반대로 이 사건 승인취소의 철회 또는 이 사건 행사의 진행을 제하지 않고 보장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와 평등권 등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등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고, 집회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운영되며, 이에 대한 방해행위는 위 법률 제3조에 의하여 금지된다.

이 사건 행사의 주최측인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위 법률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하여 이 사건 행사에 관하여 적법하게 집회 신고를 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 사건 행사에 대하여 위 법률에 따른 아무런 금지 또는 제한 통고를 하고 있지 않다.

한편, 이 사건 승인요청의 내용은 이 사건 행사 당일 신촌 연세로에 대한 ‘차 없는 거리’의 시작 시간을 원래의 14:00에서 10:00로 당겨 운영할 수 있도록 교통통제에 협조를 요청한다는 것이고, 이 사건 승인은 이를 수용한 것이며, 이 사건 승인취소의 내용은 이 사건 행사 당일 다시 원래의 14:00부터 ‘차 없는 거리’의 교통통제를 하겠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상의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승인취소는 집회로서의 이 사건 행사의 불허가 아니라 이 사건 행사 집회에 대한 서울지방경찰청의 협조와 별도로 서대문구청장이 이 사건 행사가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협조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퀴어문화축제조직위

원회'와 '신춘번영회'는 이 사건 행사를 '차 없는 거리'의 시행이 시작되는 14:00부터 집회신고의 내용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이 사건 승인취소를 철회한다면 이 사건 행사가 조기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는 집회의 자유를 증진하는 방법으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한편, '차 없는 거리'의 운영주체가 서대문구청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승인취소에 따라 이 사건 행사를 '무단행사'로 보아 신춘 연세로에서 열리는 부스행사 등 이 사건 행사의 진행에 대하여 개입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행사는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이고,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집회방해행위에 해당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적어도 자유로운 집회를 진행하는 데에 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제지하거나 개입하지 않는 것은 평화로운 집회로서의 이 사건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증진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일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승인취소는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의 국가적 추모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서울시 역시 이러한 분위기를 감안하여 모든 야외행사를 취소하는 등 추모분위기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춘번영회'가 개최하고자 하는 이 사건 행사가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것인바, 이러한 이유가 이 사건 승인취소 철회 또는 이 사건 행사 진행 보장에 대한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이 사건 승인취소의 이유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의 국가적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음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추모와 애도는 시민의 자발성과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 역시도 부정할 수 없다. 추모와 애도는 행사의 취소나 연기가 아니라 그 행사의 진행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재난에 대하여는 개인의 고립된 추모와 애도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추모와 애도, 그에 따른 치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행사의 주최자인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이 사건 행사가 인권행사로서 애도와 추모의 의미를 담아 진행될 것임을 밝히고 있고, 세월호 침몰사고에 따라 제기된 주제와 일맥상통하게 우리사회가 성소수자를 포함하여 모두가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부스행사 참가단체들 역시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집단적 추모와 애도가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의 국가적 추모 분위기에 해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고에 대한 추모와 애도의 사회적 의미를 환기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물론 큰 규모의 축제라는 형식으로 인하여 추모와 애도의 분위기를 해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축제의 형식은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나누고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사회적 고통을 무시한 즐거움의 표현과 발산만을 위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특히 이 사건 행사는 일상적으로 편견과 차별, 폭력에 노출된 성소수자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이러한 고통과 억압을 넘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평등을 주장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인권행사이므로, 이러한 행사가 세월호 참사를 외면하고 흥겨움만을 추구하는 행사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가적 추모분위기가 이 사건 승인취소를 철회하거나 이 사건 행사 진행을 보장하는 데 대한 장애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승인취소의 철회 또는 이 사건 행사 진행의 보장이 성소수자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증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 사건 승인취소는 위와 같이 세월호 침몰사고에 따른 추모분위기로 인한 것을 이유로 하고 있고 성소수자 행사라는 점은 직접적인 이유로 들고 있지 않으나, 1) 2014. 5. 23.부터 이 사건 행사 개최에 관한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등의 집단적인 반대 민원이 서대문구청, 서울시 다산콜센터 등에 다수 접수된 이후에 이 사건 승인취소가 있었다는 점, 2) 이 사건 승인취소에서 “행사의 성격, 내용 등을 감안 할 때 행사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 부적합하거나 저촉된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시되어 “행사의 성격, 내용”에 있어 이 사건 행사가 성소수자 관련 행사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3) 이미 2014. 5. 31.~6.1. 이 사건 행사가 열릴 예정인 신촌 연세로에서 부스규모, 공연 규모, 참가단체의 수, 참가자의 수 등에 있어서 이 사건 행사에 비해 2배 이상의 규모인 “2014 유니브엑스포 서울”이 개최되었다는 점, 4) 다른 서울시내 대규모 야외행사로서 2014. 5. 17.~18. 송파구청 등이 참여한 “서울재즈페스티벌 2014”가 올림픽공원에서 열렸고, 2014. 5. 31.~6.

1. “그린플러그드 서울 2014”가 세월호 추모를 이유로 3주 연기되어 개최된 바 있다는 점, 5) 최근 마포구청이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 행동’ 등이 주최하고자 한 성소수자 문화행사 대해 홍대 앞 나무무대 사용신청을 불허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한 바 있고, 대구퀴어문화축제와 관련해서도 대구시설관리공단이 2.28공원에 대한 공간사용거부를 내린 후 이를 취소하고 공간사용을 허가하는 등의 사건이 있어, 이 사건 승인취소가 이러한 지방자치단체가 행한 차별행위의 연장선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승인취소나 이 사건 행사 진행에 대한 제지 또는 개입이 성적지향 또는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불이익한 대우로 파악되거나 차별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정사실에 따르면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시민사회단체는 이 사건 승인취소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관점에 반영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언론 등을 통해서도 이 사건 승인취소가 성소수자 관련 행사에 대한 불허로서 논의되고 있는바, 이러한 이 사건 승인취소, 그리고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행사 진행에 대한 제지나 개입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불이익한 대우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 사건 행사와 다른 행사의 다른 취급에 있어 그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서 합리적

인 이유 없이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 재화, 용역, 토지의 이용 등에 있어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2011.에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결의안이 통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역시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찬성을 하였고,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와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에서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 국제인권규약에 의해 금지된다고 반복하고 있는 등,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내 또는 국제적 합의는 이미 확고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도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등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를 천명하고 있는 한편, 「광명시 시민인권조례」, 「과천시 성평등 기본조례」 등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에서도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성소수자와 관련한 행사를 다른 행사와 특별히 다른 취급을 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성소수자 관련 행사라 하여 특별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기 어렵고, 다수의 국가 인권위원회 결정에 실시한 바와 같이 성소수자에 관한 정보나 행사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민원 발생과 갈등이 예상되는 행사를 승인하는 것에 부담을 가질 수는 있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러한 갈등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과

정에서 사회적 소수자가 불합리한 차별과 억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소수자에 대한 불합리한 편견과 혐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승인취소를 철회하거나 이 사건 행사의 진행을 보장하는 것은 성소수자가 차별과 억압, 편견과 혐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불식시키는 것으로서 평등권을 보장 및 증진하는 데 필요한 일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향후 성소수자임을 이유로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서대문구 인권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서대문구청장은 그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 노력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승인취소의 철회 및 이 사건 행사 진행의 보장과 향후 성소수자임을 이유로 한 행사불승인 등 인권침해의 재발가능성을 막기 위한 재발방지대책의 마련은 주민의 집회의 자유, 평등권 등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9명의 참석과 참석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6. 5.

서대문구인권위원회

<별지>

검토 및 참고기준

1. 검토기준

가.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①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세계인권선언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20조 1.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마.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1.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제21조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제26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선언된 권리들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제15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의 다음 권리를 인정한다.

(a)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서대문구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① 구청장은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3조 ① 구청장은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에 관한 사항
5. (생략)

제21조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 등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참고기준

가.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라 함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 ① 모든 시민은 인권을 존중받으며,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나. 과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6조 시장은 성소수자의 평등한 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6조 ① (성평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7. 성소수자의 인권에 관한 사항

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일반논평20(2009)

3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2.에서 인정되는 “기타의 신분”은 성적지향을 포함한다. 당사국은 개인의 성적지향 때문에, 예를 들어 유족연금에 대한 권리 등, 규약상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성별정체성도 차별금지사유의 하나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트랜스젠더, 트랜스섹슈얼, 인터섹스는 학교나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에 자주 직면한다